■ 공소청보존사무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지 방 공 소 청

우/ - 주소 /전화 - - /전송 - -

수신자 귀하 (우, 주소)

제 목 **사건기록** **[]열람 []등사** **불허가 통지**

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(진정·내사·수사·시정)제 호 사건기록 열람·등사 신청에 대해 **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9조제6항, 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에 따라** 아래와 같이 (전부, 일부) 불허함을 통지합니다.

불 허 부 분※	**불 허 이 유 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)**
	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 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1호**)
	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2호**)
	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3호**)
	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4호·제5호**)
	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6호**)
	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7호**)
	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8호**)
	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9호**)
	9.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(**「공소청보존사무규칙」 제22조제1항제10호**) * 별지 사용 가능

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(○○지방공소청장) 또는 재결청(○○광역공소청장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 . . . **○ ○ 지방공소청**

검사 ㊞

297㎜ × 210㎜[백상지(80g/㎡)]